퇴직금규정

제 정 2006. 6. 30 개 정(1) 2014. 3. 3 개 정(2) 2014. 7. 18 개 정(3) 2018. 12. 13 개 정(4) 2019. 4. 10 개 정(5) 2019. 10. 23 개 정(6) 2021. 4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평균임금은 기준급, 제수당 및 업적급을 말한다.
- ②기준급은 기본급과 직무급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사유) ①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급한다.

- 1. 정년퇴직
- 2. 의원퇴직
- 3. 해 직
- 4. 사망으로 인한 퇴직
- 5.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
- 6. 고용계약기간 만료
- 7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 의한 퇴직금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(이하 "중도인출"이라 한다)
- ②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1항 제7호에 의거 중도인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지급액) ①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에 근속기간 1년당 1을 승(乘)한 금액으로 한다.
 - ②국외지사(지점, 사무소, 주재원 및 현지법인을 포함한다)재직중 퇴직하는 본국

직원의 퇴직금은 국내 월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

- 제5조(근속기간) ①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휴직 및 정직기간을 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제외한다.
 - 1.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
 - 2. 자비 해외유학의 경우(단, 공사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경우 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해당학위 관련 휴직상당기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석사학위의 경우 2년, 박사학위의 경우 석사과정 포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속기간에 산입함)
 - 3. 외국에서 근무,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
 - ②제1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은 1월로 한다.
- 제6조(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) ①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,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②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나 형사재판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감액분의 지급을 유보한다.
- 제7조(사망자의 퇴직금 수령)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.
- 제8조(준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) ①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로서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기준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1. 공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
 - 2.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재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
 - 3.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와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
 - 4.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자
 - 5.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- ③제1항의 특별퇴직금의 정년잔여기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1. 1년이상 5년이내 : 월기준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% × 정년잔여월수 × 1/2
- 2. 5년초과 10년이내 : 월기준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% × [30 + (정년잔여월 수 60) × 1/4]
- 제9조(특별퇴직금 지급결정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제10조(퇴직금 최저지급액)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.
- 제11조(하부위임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시행일 전일 현재 내부 품의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